



제439회 국회 (정기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민간 주차요금 감면 의무화 〉
■ 윤종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9392호)

2026. 9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오 세 일

목 차

□ 윤종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9392호)	1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3
1.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민간 주차요금 감면 의무화(안 제14조·제19조의3·제21조)	3

□ 윤종균의원 대표발의(2219392)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윤종균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6. 6. 22.
3. 회 부 일 : 2026. 7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% 감면하도록 하고,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후

단,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민간 주차요금 감면 의무화(안 제14조·제19조의3·제21조)

가. 검토의견

개정안은 모든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서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% 이상 감면하도록 하고(안 제14조제1항·제2항 및 제19조의3제1항),

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항).

현행	개정안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	②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u>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</u> ③ (생략) 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 ② ~ ④ (생략) 제21조(보조 또는 용자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 -----, <u><단서 삭제></u> ③ (현행과 같음) 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 ① ----- -----. <u>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1조(보조 또는 용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 제1항 및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<u>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에서는 노상주차장(지자체장이 설치)과 노외주차장 중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¹⁾에 대해서만 경형자동차²⁾와 환경친화적 자동차³⁾의

주차요금을 50% 이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⁾. 즉, 현재는 공공부문에서만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이 의무화되어 있음.

개정안은 설치·운영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

1) 「주차장법」상 주차장의 종류 및 설치 주체

구 분	내 용	설치주체
노상주차장	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	지자체장
노외주차장	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	지자체장, 민간
부설주차장	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	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 등)

2)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(「주차장법」 제6조제1항제1호)

3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**환경친화적 자동차**”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 - 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 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
4) 「주차장법」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“노상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노외주차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에 대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% 이상 감면하도록 규정하여, 현재 공공부문 중심으로 적용되는 주차요금 감면의무를 민간에도 부과하려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의무가 확대될 경우, 대형 상업시설·업무시설·병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부설주차장까지 감면대상이 되므로 현행 공공부문 중심의 감면제도보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확대될 수 있어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첫째,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·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정상요금의 최소 50%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.

이는 민간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와 영업수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
둘째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촉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특정 사업자인 주차장 운영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
개정안에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부담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, 주차요금 감면은 최소감면율을 50%로 확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, 재정지원은 임의적 규정으로 예산확보 여부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, 민간사업자의 손실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.

셋째, 민간사업자가 주차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경우, 그 비용이 일반 자동차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.

넷째, 주차요금은 승용차 이용비용에 영향을 미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됨⁵⁾. 개정안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민간주차장에서 전면적으로 50% 이상 감면할 경우 승용차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
따라서,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촉진이라는 환경정책적 목적에는 부합하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승용차 이용 억제,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라는 교통정책의 목적과는 상충되며, 교통혼잡지역에서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효과도 유

5)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에서는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, 주차장 유료화, 주차요금 인상, 주차면수 감축 등의 교통량 감축활동 시 해당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음.

발하는 측면이 있음.

나. 국토교통부 의견

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, 민영주차장에 대해 요금 감면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율적인 운영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.

민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입지, 수요, 운영비용 및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 결정하는 사항으로, 일정 비율 이상 감면 강제 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.

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, 지원 범위와 재원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감면 부담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문 의 처
02)6788-5584